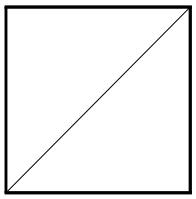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60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6. 17. (제 11차)

의결사항

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6. 17.

1. 의결주문

□ 「**중소기업은행법**」 **제6조제2항**에 따라, 중소기업은행이 인가 신청한 별지의 「**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안**」을 **원안대로 인가**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'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 개최' 근거 규정 신설(정관 제21조 제5항 신설)

□ '25.7월 「상법」 개정*에 따라 **일정 규모**(자산 규모 2조원) 이상의 상장회사는 **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**가 **의무화**됨에 따라 근거 규정 신설

※ 다만,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관한 개정 「상법」은 '27.1.1일 시행으로, 정관의 동 조항은 법 시행일과 동일한 날짜('27.1.1일) 시행으로 정관 부칙에 규정

나. '사외이사' 명칭 변경(정관 제33조, 제38조, 제39조의2 및 제42조 개정)

□ '25.7월 「상법」 개정*에 따라 기은 정관상 '사외이사'를 **'독립이사'**로 **변경 표기**

* (개정 상법 §542의8 ①) 사외이사 중 사내이사와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서 독립이사를 별도 규정

○ 이사회 구성(§33) 및 임면(§38), 직무(§39의2), 겸직제한(§42) 관련 조항에 사외이사를 **'독립이사'**로 **수정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고2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2026년도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6.11.) 심의필

마. 기　　타 : 1) 정관 일부변경안 원문 별첨

2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< 별 지 >

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안

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당은행은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

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② 이사는 상임이사 1인 이내와 독립이사 4인 이내로 한다.

③ 독립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

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③ 독립이사는 경영, 경제, 회계,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.

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④ 독립이사는 은행장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당은행의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,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
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② 당은행의 독립이사는 한국은행,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의 변경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참고1 >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제21조(총회의 소집) ①~④ (생 략)	제21조(총회의 소집) ①~④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⑤당은행은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	
제33조(임원) ①(생 략) ②이사는 상임이사 1인 이내와 사외이사 4인 이내로 한다. ③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	제33조(임원) ①(현행과 같음) ②이사는 상임이사 1인 이내와 독립이사 4인 이내로 한다. ③독립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	
제38조(임원의 임면) ①·② (생 략) ③사외이사는 경영, 경제, 회계,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.	제38조(임원의 임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독립이사는 경영, 경제, 회계,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.	

④(생 략)	④(현행과 같음)	
제39조의2(임원의 직무) ①~③ (생 략) ④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당은행의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,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 ⑤·⑥ (생 략)	제39조의2(임원의 직무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독립이사는 은행장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당은행의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,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 ⑤·⑥ (현행과 같음)	
제42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 ①(생 략) ②당은행의 사외이사는 한국은행,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.	제42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②당은행의 독립이사는 한국은행,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.	

< 참고2 > 관 계 법 규

□ 중소기업은행법

제6조(정관)

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10. (생 략)

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□ 중소기업은행 정관

제4조(정관의 변경) 당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산업금융과
연 락 처	02-2100-2864